

투자위험등급 :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알리안츠 코리아 증권 투자신탁[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리안츠 코리아 증권 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알리안츠 Best Research 증권 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의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allianzglobalinvestors.co.kr)의 인터넷 홈 페이지를 참고)
4. 작성 기준일 : 2009년 6월 12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09년 6월 23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5,000억 원까지 모집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2. 모집예정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펀드존속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6. 책임투자운용인력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III. 매입, 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환매 절차
4. 전환절차 및 방법

IV. 요약 재무정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 시 일괄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회사, 보험 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 칭 :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펀드코드
알리안츠 코리아 증권 투자신탁[주식]	52104
A	31692
A2	95081
E	95082
I	93642

2. 모집예정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3. 모집예정금액 : 5,000억좌

이 투자신탁은 5,000억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 또는 예정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펀드존속기간 :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 :

회 사 명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1 알리안츠타워 ☎ 02-2071-9900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한도	주요 내용
① 주식	60%이상 단, 국내에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

	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장법인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② 채권	40%이하, 주식관련사채 35%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법 제71조제4호에 따른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 자산유동화증권	30%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어음	35%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인 것
⑤장내파생상품	증거금 15% 이하	법 제9조제14항의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선물, 주식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국채선물옵션, 통화선물 및 통화선물옵션
⑥수익증권	5%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제189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⑦투자증권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투자증권총액의 50% 이하	
⑧환매조건부채권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총액의 50% 이하	
수탁회사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단기대출, 금융기관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다음의 경우에는 ① ~ ④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적용예외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마.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 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1) 투자대상 중 ①부터 ④까지의 투자한도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2)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등 법시행령 제8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투자대상 ⑤부터 ⑧까지 및 아래의 투자제한 ②부터 ⑥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 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보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아래의 투자제한 ⑦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운용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목적

Allianz그룹의 전문적이고 투명한 결정과정과 자체조사팀에 의한 철저한 “Bottom-up” 분석과 기업방문 등 체계적인 투자대상 종목선정을 통해 우량주식에 집중 투자하여 벤치마크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또한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자의 특성에 알맞게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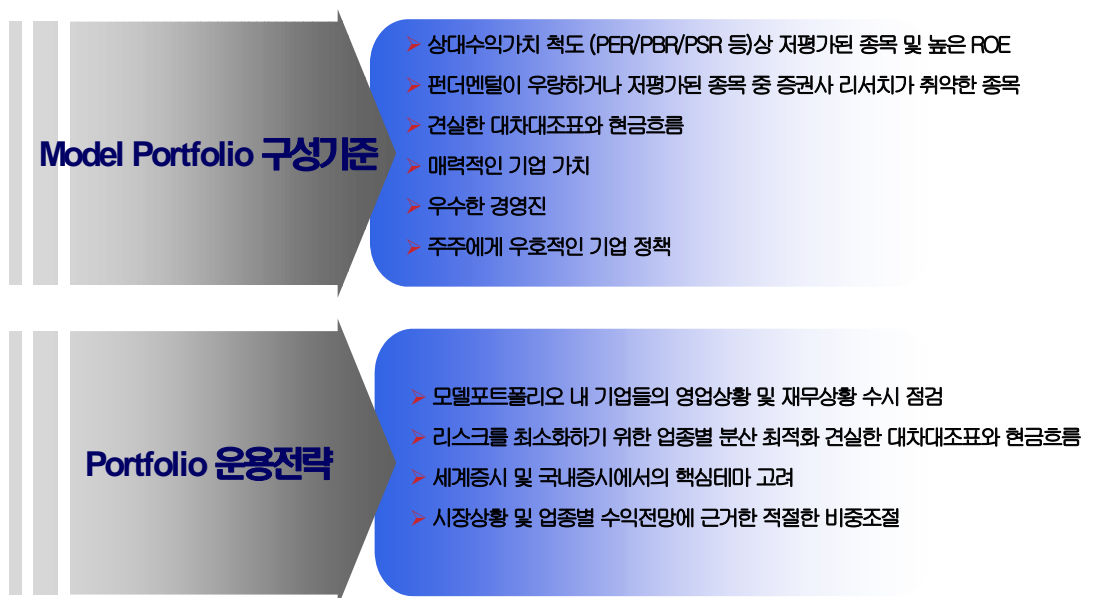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2009년 5월 4일부터 KOSPI Index X 100%입니다. 상기의 변경 비교지수가 실제 투자 전략을 더욱 잘 반영한다고 판단하여 변경하였으며, 2009년 5월 3일 까지의 비교지수는 (KOSPI200 Index X 87.5%) + (Call X 12.5%)입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 펀드운용계획 전 세계적으로 700조원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Allianz그룹의 전문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과정, 자체조사팀에 의한 철저한 “Bottom-up” 분석과 기업방문 등 체계적인 투자대상 종목선정을 통해 우량주식에 집중 투자하여 벤치마크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운용 전략



※ 상기의 전략은 시장 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 위험 관리

(1) 리스크관리의 원칙

- 펀드 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 리스크 요인별로 사전적/사후적 대응 방향을 설정
- 고객에 대한 선량한 자산관리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토록 함

(2) 리스크관리 정책

- 운용자산관련 투자 및 리스크 관리 규정 제정 및 운영
- 투자의사결정과 병행하여 펀드의 시장 / 신용 / 유동성 리스크를 측정
-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당사의 사무수탁회사인 외환펀드서비스 프로그램

내에 구축

-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리스크 관리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Daily Monitoring 및 Monthly Risk Reporting

3. 수익구조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서 “Bottom-up” 분석과 기업방문 등 체계적인 투자 대상 종목선정을 통해 우량주식에 집중 투자하므로, 편입된 주식 등의 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상품 가입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식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주식가격 변동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로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변동 및 개별종목의 주가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주식가격은 일일 변동성이 채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손실금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투자신탁은 지분증권(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투자신탁이나, 주식과 채권을 적절히 혼합하여 투자하는 혼합형투자신탁 등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 자산운용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위험	- 주식을 약관상 6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 주식을 약관상 30% 초과 60% 이하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인덱스형 집합투자기구(파생상품형 포함)
3등급	중간위험	- 주식을 약관상 30%이하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신탁 - 이머징마켓채권, 후순위채권, 투기등급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 투자적격등급(BBB+ 이상) 이상의 국공채, 회사채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낮은위험	- MMF

주1) 투자위험등급분류는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의 자체기준으로 투자자의 위험성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2)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편입하고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주3)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합니다.

주4) 모자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 및 편입비율 등을 기초로하여 분류합니다.

주5)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방법에 따라 별도로 분류합니다.

6.운용전문인력

(순자산 기준,2009.2.28 현재)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강정구	68년생	이사	7개	615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4-2000 동양종합금융 2000 삼성증권 2000-2008 AGI 자산운용 총 경력: 15 년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2)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 보수가 약정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및 개수
: 254억/ 사모 투자신탁 2개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연평균 수익률

(2009년 2월 28일 기준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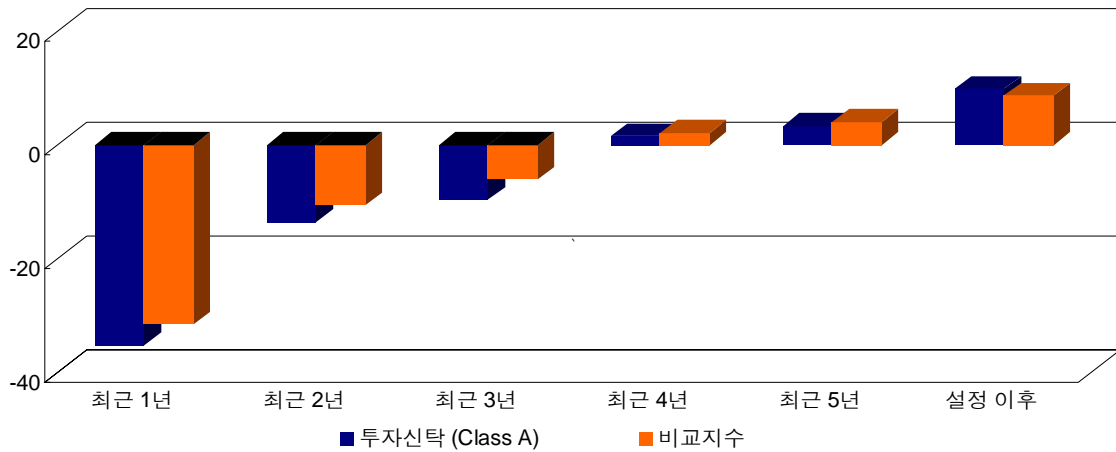
종류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4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08.3.1~ 09.2.28	07.3.1~ 09.2.28	06.3.1~ 09.2.28	05.3.1~ 09.2.28	04.3.1~ 09.2.28	Class A: 01.3.3~09.2.28

						운용펀드: 05.11.1~09.2.28
Class A	-35.24	-13.60	-9.68	1.54	3.38	9.88
비교지수	-31.66	-10.57	-6.09	-2.12	4.03	8.76
Class I	-	-	-	-	-	-
비교지수	-	-	-	-	-	-
운용펀드	-33.64	-11.56	-7.57	-	-	-
비교지수	-31.66	-10.57	-6.09	-	-	-

주1) 비교지수: KOSPI200 Index 87.5% + Call 12.5% (2009.5.4일부터 KOSPI Index 100%로 변경)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수익률은 2009년 2월 28일 기준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2. 연도별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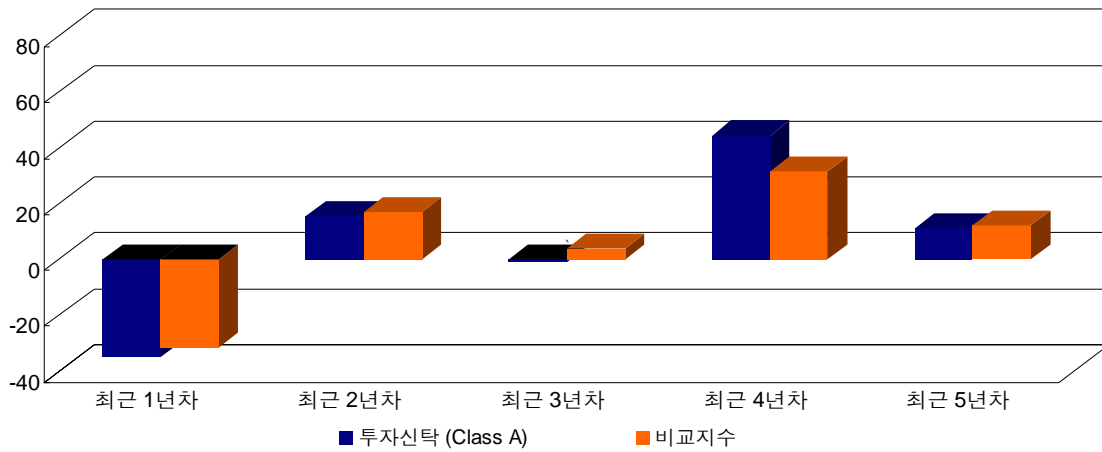
(2009년 2월 28일 기준 / 단위: %)

종류	최근 1년차(%) 08.3.1~ 09.2.28	최근 2년차(%) 07.3.1~ 08.2.28	최근 3년차(%) 06.3.1~ 07.2.28	최근 4년차(%) 05.3.1~ 06.2.28	최근 5년차(%) 04.3.1~ 05.2.28	기간 수익률 (%) Class A: 01.3.3~ 04.2.28
Class A	-35.24	15.28	-1.29	44.25	11.09	80.00
비교지수	-31.66	17.01	3.56	31.34	12.04	60.68
운용펀드	-33.64	17.87	0.95	-	-	-
비교지수	-31.66	17.01	3.56	-	-	-

주1) 비교지수: KOSPI200 87.5% + Call 12.5%(2009.5.4일부터 KOSPI Index 100%로 변경)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2009년 2월 28일 기준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Class A 2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	1.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
	환매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합계	납입금액의 1%+ 투자기간별 환매수수료	
Class A 수익증권 Class I 수익증권 Class E 수익증권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
	환매수수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합계	투자기간별 환매수수료	

주) 판매수수료는 매입 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환매 시 일회적 부과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 연)				지급시기
	Class A	Class A2	Class E	Class I	
수익증권 판매기준	제한없음	제한없음	인터넷전용	펀드, Wrap 등	
집합투자업자	0.650	0.650	0.650	0.650	매3개월
판매회사	1.540	0.700	1.080	0.000	
신탁업자	0.030	0.030	0.030	0.030	
일반사무관리	0.010	0.010	0.010	0.010	
보수합계	2.230	1.390	1.770	0.690	
기타비용	0.034	0.034	0.034	0.034	발생 시
총보수·비용	2.264	1.424	1.804	0.724	매3개월
증권거래비용	0.953	0.953	0.953	0.953	발생 시

- 주1) 기타비용은 증권 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2008.3.3~2009.3.2)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3)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2008.3.3~2009.3.2)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4) Class A2, Class E, Class I는 미설정인 관계로 Class A의 기타 비용 및 증권 거래비용을 사용하였습니다.
- 주5)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일괄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0만원 투자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1,000원)

투자기간	가입시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Class A 수익증권	-	226	714	1,251	2,848
Class A2 수익증권	99	241	548	886	1,890
Class E 수익증권	-	108	342	599	1,363
Class I 수익증권	-	72	228	400	911

- 주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를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2)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NAV)변동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 주3) 종류별(Class A와 Class A2)로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1년 2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으며,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환급세액</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외국납부세액</div>	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환급비율</div>
환급비율 : (사업연도 총소득-국내비과세소득)/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환급비율 > 1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신탁재산의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등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증권시장 또는 전자증권중개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때에 다음 각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법 제117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내지 제6

항, 동 법 제11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자"라 한다) 수가 30인을 초과할 것
- 30인(집합투자자가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체 집합투자자 수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수) 이하의 집합투자자가 해당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 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신탁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법인의 다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적립식 가입의 경우 세제 혜택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 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 (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나.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4. 소득공제 비율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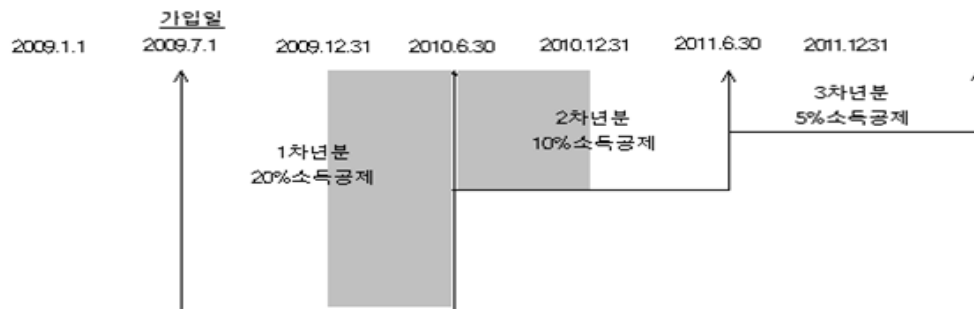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5. 소득공제 사례

투자자 A가 2009. 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가.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나.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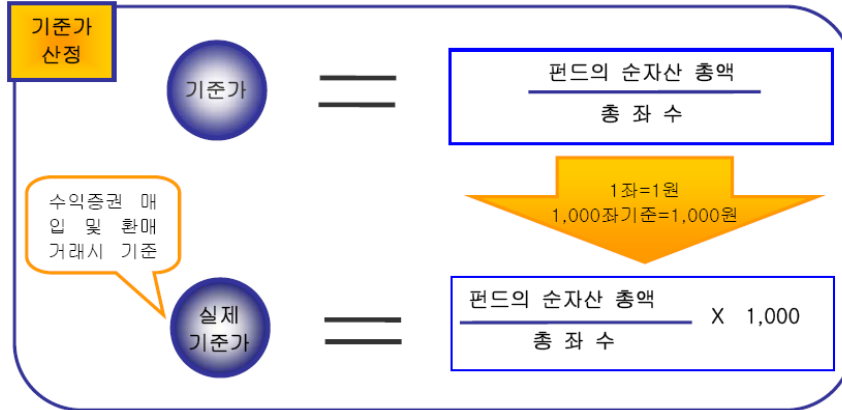
※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간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전자공시]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기준가격 산정



(2) 매입 및 환매 절차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회사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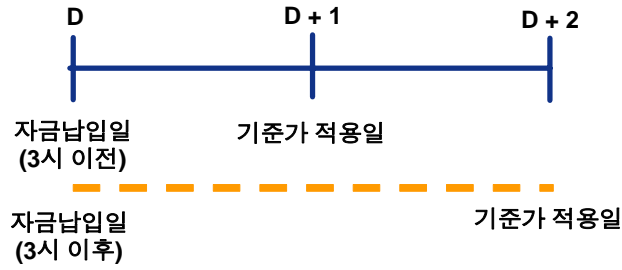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자격은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
Class A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Class A2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종류형 수익증권
Class E	투자자의 자격을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Class I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한함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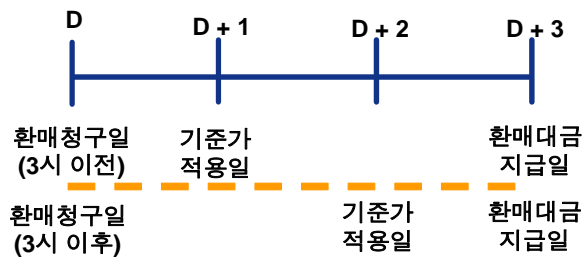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해당 Class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이 지급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Class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Class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Class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일 까지를 말합니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주)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이 일정한 날의 전전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IV 요약 재무정보

대차대조표			
항목	제 8 기	제 7 기	제 6 기
	2009.3.2	2008.3.2	2007.3.2
운용자산	11,865,666,455	27,908,724,257	46,062,640,120
현금및예치금	120,300,846	148,592,837	57,462,020
현금및현금성자산	120,300,846	148,592,837	57,462,020
대출채권	0	530,000,000	560,000,000
콜론	0	530,000,000	560,000,000
유가증권	11,745,365,609	27,230,131,420	45,445,178,100
지분증권	11,745,365,609	27,230,131,420	45,445,178,100
기타자산	699,420,109	1,606,146,155	991,770,304
매도유가증권미수금	513,530,912	1,190,387,081	305,574,340
미수이자	10,697	255,754	79,844
미수배당금	185,878,500	415,503,320	686,116,120
자 산 총 계	12,565,086,564	29,514,870,412	47,054,410,424
기타부채	666,137,358	4,439,816,437	615,398,282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579,828,563	782,506,180	0
해지미지급금	13,241,268	88,087,655	364,936,266

미지급운용수수료	20,175,469	53,237,045	79,758,756
미지급판매수수료	47,800,342	114,633,283	161,007,403
미지급수탁수수료	1,862,350	4,914,186	6,135,288
수수료미지급금	3,229,366	1,717,194	1,227,057
미지급이익분배금	0	3,394,720,894	0
부 채 총 계	666,137,358	4,439,816,437	615,398,282
원 본	19,115,840,457	25,075,053,975	47,129,862,547
이익잉여금	-7,216,891,251	0	-690,850,405
자 본 총 계	11,898,949,206	25,075,053,975	46,439,012,142
부채 및 자본 총계	12,565,086,564	29,514,870,412	47,054,410,424
총좌수	19,115,840,457	25,075,053,975	47,129,862,547
기준가격	622.47	1,000	985.34

가. 대차대조표

(단위: 원)

나. 손익계산서

(단위: 원)

손익계산서			
항목	제 8 기	제 7 기	제 6 기
	2008.03.03 ~ 2009.03.02	2007.03.03 ~ 2008.03.02	2006.03.02 ~ 2007.03.02
운 용 수 익 (또는 운 용 손 실)	-7,606,275,045	8,518,620,701	806,519,731
투자수익	311,407,195	624,388,804	816,164,095
이자수익	62,465,236	72,797,807	90,140,837
배당금수익	247,565,044	524,181,220	705,045,820
수수료수익	1,376,915	27,409,777	20,977,438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177,011,581	13,345,640,846	8,266,817,124
지분증권매매차익	2,086,286,581	13,095,750,628	6,901,130,367
파생상품매매차익	90,725,000	0	0
지분증권평가차익	0	249,890,218	1,365,686,757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0,096,814,737	5,451,572,880	8,276,461,488
지분증권매매차손	8,970,302,731	5,451,572,880	8,276,461,488
파생상품매매차손	177,160,690	0	0
지분증권평가차손	949,351,316	0	0
기타운용수익	2,120,916	163,931	0
운 용 비 용	416,276,437	837,022,078	1,023,643,896
운용수수료	118,410,185	259,717,611	310,012,550
판매수수료	280,484,221	547,407,004	675,850,741
수탁수수료	10,930,167	23,973,926	28,616,534
매매수수료	242,628	319,879	256,487
기타운용비용	6,209,236	5,603,658	8,907,584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8,022,551,482	7,681,598,623	-217,124,165
좌당순이익 (또는 좌당순손실)	-366.55	231.92	-9.09